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수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0월 17일

발 의 자 : 김광수(도봉)·김용석(도봉)

최영수·김광수(노원)·김동승

한명희·최조웅·박준희·이상묵

이승로·이종필·오경환·유광상

김창원·김제리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'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')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,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.

이에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,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,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 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